

공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6-438호

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.
2.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4월 22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6. 4.25. ~ 2016. 5.24(30일)
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 (☎2148-2673)

다. 정비사업의 명칭 : 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라. 변경사유 :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및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.

마. 정비구역 변경조서

1. 수송구역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감	변경	
기정	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	종로구 수송동 146-2 일대	73,091.1	-	73,091.1	

2. 수송1-3구역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감	변경	
기정	수송1-3 도시환경정비구역	종로구 수송동 146-2	8,622.3	-	8,622.3	

바. 정비기반시설 변경결정조서

○ 도로

결정 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사용 형태	위 치	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기 점	종 점			
기정	중로	1	175	20~23	집산 도로	일반 도로	2,800 (357.1)	세종로 82-14	충신동 27-64	-	서고시제39호 (1978.02.10)	-
기정	중로	1	-	20	-	-	- (92.0)	청진동	중학동	-	내무부고시 제449호 (1958.11.03)	-

사. 정비계획 변경내용

1.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

결정구분	항 목	계획내용		비고
		적용구간	적용기준	
기정	건축지정선	• 서측 중로 1길변	3m	
변경	건축지정선	• 서측 중로 1길변	3m	※ 기존건축물(종로소방서)는 제외

2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결정구분	항 목	계획내용	비고
기정	공개공지	• 1-3 지구 - 지구의 남동측변에 위치	
변경	공개공지	• 1-3 지구 - 지구의 중심부로 이동 (공공보행통로 추가연결)	위치변경

3.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	비고
	기정	변경	
공공보행통로	종로1길과 종로5길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	- 공개공지 이동에 따른 1-3지구 남측에서 북동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추가 조성 - 지하주차장 조성시 1-3지구 남측부터 1-2지구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조성	
제한적 차량출입금지 구간	1-3지구(종로소방서)의 긴급차량진출입을 위한 제한적 차량출입금지 구간 조성 - 서측 종로1길변 72m(1-3지구) - 남측 삼봉로 754m(1-3지구)	1-3지구에 진출입하는 차량통행로를 추가적으로 허용 - 서측 종로1길변 72m(1-3지구)	

아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. 끝.